

의안 번호	2508	<p>【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(안)】</p> <h1 style="margin: 0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5.(금)

2. 제안이유

-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(안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조성액	
1,114,136	559,000	780,840	△221,840	892,296

나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편성목	산출내역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
	계	1,673,136	1,397,921	275,215
216-01	공공예금 이자수입	27,000	28,000	△1,000
714-01	예치금 회수	1,114,136	862,921	251,215
721-03	기타회계 전입금	532,000	507,000	25,000

다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편성목	세부내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		계	1,673,136	1,397,921	275,215
재난 및 재해 사전 예방 사업	401-01	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	50,000	100,000	△50,000
		재난예방사업비	100,000	25,000	75,000
재난 및 재해 응급 복구	201-01	제설장비 임차료	90,000	90,000	0
		재난복구장비 임차료	250,000	150,000	100,000
		재난대응 물품 구입	100,000	100,000	0
		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근무자 급량비	15,840	10,000	5,840
	206-01	제설자재 구입	25,000	-	25,000
	401-01	응급복구사업비	150,000	100,000	50,000
보전지출	602-01	일반예치금	6,296	16,921	△10,625
	602-02	의무예치금	886,000	806,000	80,000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13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 및 6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으로
- 2026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
 -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275,215천원이 증액된 1,673,136천원으로 편성되었음
 -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

예치금 회수 251,215천원 증액,
일반회계 전입금 25,000천원 증액,
공공예금 이자수입 1,000천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275,215천원
증액편성 되었음

-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

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 사업에 25,000천원 증액,
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사업에 180,840천원 증액,
예치금인 보전지출은 69,375천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275,215천원
증액편성 되었음

-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
및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편성되어 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
없는 것으로 판단됨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

제12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)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